

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 공시송달 공고

「부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」 제40조(정수처분)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라 급수시설이 정수 처분된 자에게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(처분의 사전통지)에 따라 체납고지서 및 재산압류 예고서를 소유주 또는 사용자의 주소지로 등기 송달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3조(공시송달)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1. 공고기간 : 2023. 4. 12. ~ 4. 25. (14일간)
2. 공고내용 :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처분 사전 예고
3. 법적근거 : 수도법 제68조(요금 등의 강제징수)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(압류) 지방세기본법 제33조,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
4. 소유자 주소 :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3로 1, 330호(우동, 선프라자)
5. 압류예고 재산표시

소유자 성명	자동차 번호	자동차 명	모델연도	비 고
주식회사 드*움*설	1*3러 93**	렉*스 ES300h	2020	-

6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고객번호	급수전 현황		체납현황		정수처분
	수용가	주소	체납기간	금액(원)	
119537-100	주식회사 드*움*설	부산광역시 동래구 총렬대로237번길 6 (수안동)	2022.06 ~ 2023.02	8,287,220	2023-01-10

7. 납부안내

- 상기 급수전 수용가는 공고기간 내 체납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「수도법」 제68조 제1항에 의거 요금 등을 강제징수할 것이며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3조에 의거 귀하 동산을 압류 조치함을 알려 드립니다.

*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래통합사업소 요금부서(☎ 051-669-521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23. 4. 12.

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래통합사업소

